



VIII. 유형별 공문 및 결정통지서 작성 방법



차 례

I. 업무처리 관련 ● 247

1. 청구내용에 대한 보완 요청 -----	247
2. 제3자의 의견 청취 -----	248
3. 제3자에 대한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 알림 -----	251
4. 기관이송 안내문 -----	252
5. 민원이첩 안내문 -----	253
6. 공개기간 도과로 인한 종결처리	
6-1.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수료 미납시 기간 도과 종결 처리 사전 안내문 -----	254
6-2. 공개 기간 도과로 인한 최종 종결 처리 -----	255
7. 반복민원에 대한 종결처리 -----	256
8.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 -----	257

II. 공개 결정통지 관련 ● 259

1. 공개 결정통지(일반) -----	259
2. 공개 결정통지(정보소재 안내) -----	262
3. 공개 결정통지(타 정보로 같음) -----	264
4. 공개 결정통지(즉시공개) -----	266
5.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반한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 -----	267

III. 부분공개 결정통지 관련 ● 268

1. 부분공개 결정통지(법 제9조제1항제1호 해당시) -----	268
-------------------------------------	-----

2. 부분공개 결정통지 ----- (법 제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내지 제8호 해당시)	270
3. 부분공개 결정통지(법 제9조제1항제6호) -----	272

IV. 비공개 결정통지 관련 ● 274

1. 비공개 결정통지(법 제9조제1항제1호) -----	274
2. 비공개 결정통지(법 제9조제1항제2호) -----	276
3. 비공개 결정통지(법 제9조제1항제3호) -----	278
4. 비공개 결정통지(법 제9조제1항제4호) -----	280
5. 비공개 결정통지(법 제9조제1항제5호) -----	282
6. 비공개 결정통지(법 제9조제1항제6호) -----	284
7. 비공개 결정통지(법 제9조제1항제7호) -----	286
8. 비공개 결정통지(법 제9조제1항제8호) -----	288
9. 비공개 결정통지(정보의 부존재) -----	290
10. 비공개 결정통지(불명확한 청구 내용) -----	292

V. 불복구제절차 관련 ● 294

1. 이의신청 결정통지서(각하) -----	294
2. 이의신청 결정통지서(기각) -----	296
3.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인용) -----	298
4.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부분인용) -----	300
5.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 -----	302

VI. 수수료 감면 및 요율표 등 ● 304

1. 수수료 감면 기준 -----	304
2. 수수료 징수시기 및 징수 방법 -----	304
3. 수수료 및 우편요금 입금계좌 안내-----	304
4. 수수료 요율표 -----	305

1. 청구내용에 대한 보완 요청

청구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경우 내용 보완을 위해 보내는 공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내용 보완 요청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청구정보 내용)는 청구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특정되지 않아 대상을 확정하기 어려우니, 청구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완하신 후 다시 한번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나주시에서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청구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 목록’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 방문시 : 나주시 종합민원실 7번 창구

※ 인터넷 이용시 : 나주시홈페이지(www.naju.go.kr)내 열린시정 등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나 주 시 장

담당자

○○담당

○○과장

전결

※ 전결규정임

협조자

시행 ○○○○과-

(2009.03.) 접수

()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http://www.naju.go.kr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 이메일

/부분공개(6)

2. 제3자의 의견 청취(검토 결과 비공개 결정시는 생략 가능)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 있는 제3자에게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알리고 의견청취를 할 경우 보내는 공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나○○ 귀하(우520-701 나주시 ○○동 ○○)

(경유)

제목 정보공개 관련 제3자의 의견 요청

1. 우리시로 붙임과 같이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2.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붙임의 '제3자 의견서'에 귀하의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1부. 끝.

나 주 시 장

담당자	○○담당	○○과장	전결	※ 전결규정임
협조자				
시행	○○○○과-	(2009.03.)	접수	()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http://www.naju.go.kr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이메일		/부분공개(6)

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제 3 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 주소는 읍면동까지만 기재
정 보 내 용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 합 의 견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 허용 <input type="checkbox"/>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구두 진술시 사용하는 서식임.

제3자 의견청취서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 주소는 읍면동까지만 기재			
정 보 내 용								
의 견 청 취 일 시								
의 견 청 취 내 용								
기 타 참 고 사 항								
의 견 청 취 자 (담당공무원등)	직 급			이 름			명 또는 인	
구 술 자 (제 3 자)	기관인 경 우	기관명			직급			서 명 또는 인
					이름			
		연락처						
	경 우	이 름					서 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3. 제3자에 대한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 안내문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불구하고 공개 결정시 제3자에게 공개 결정 사실을 알릴 때 보내는 공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나○○ 귀하(우520-701 나주시 ○○동 ○○)

(경유)

제목 정보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 알림

1. ○○○○과-○○○○(2009. ○○. ○○.)과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비공개 요청하신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정보 공개(부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공개(부분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 안내】

접 수 일 자	○○○○. ○○. ○○.	접 수 번 호	○○○○○○○
청 구 정 보 내 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대상 문서명)		
공 개 (부분공개) 결 정 이 유	비공개 요청하신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공개(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함		
공 개 실 시 일	○○○○. ○○. ○○. * 참고 :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법률 제21조제3항)		

끝.

나 주 시 장

담당자 ○○담당 ○○과장 전결 * 전결규정임
협조자

시행 ○○○○과- (2009.03.) 접수 ()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http://www.naju.go.kr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이메일 /부분공개(6)

4. 기관이송 안내문

공개 청구된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아 소관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청구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주는 공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기관이송 안내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청구하신 (청구정보 내용)은 (소관기관명)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의거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날짜 : 2009. 00. 00.)자로 소관기관에 이송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기관명 :

나. 정보공개 담당자 :

나. 행정전화번호 : 끝.

나 주 시 장

담당자	○○담당	○○과장	전결	※ 전결규정임
협조자				
시행	○○○○과-	(2009.03.)	접수	()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http://www.naju.go.kr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이메일	/부분공개(6)

5. 민원이첩 안내문

청구 건이 일반민원으로 분류됐을 경우 보내는 공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민원이첩 안내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 청구는 동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청구는 (청구내용 요약)으로서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이를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신속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나 주 시 장

담당자	○○담당	○○과장	전결	※ 전결규정임
협조자				
시행	○○○○과-	(2009.03.)	접수	()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http://www.naju.go.kr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이메일	/부분공개(6)

6. 공개기간 도과로 인한 종결처리

1-1.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수료 미납시 기간 도과 종결처리 사전안내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수수료 납부를 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공개결정에 응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사전 안내할 경우 보내는 공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 사전안내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날짜) 정보공개 결정 및 공개일시 등을 귀하께 통지하였으나,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수수료 납부 등 공개 결정에 대해 응하지 않아, 향후 10일 경과할 까지 계속하여 응하지 않을 시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의거 내부적으로 종결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나 주 시 장

담당자 ○○담당 ○○과장 전결 ※ 전결규정임
협조자

시행 ○○○○과- (2009.03.) 접수 ()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http://www.naju.go.kr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이메일 /부분공개(6)

1-2. 공개기간 도과로 인한 최종 종결처리

공개된 정보에 대해 종결처리 사전안내에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응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경우 보내는 공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 안내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본 기관은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날짜) 정보공개 결정 및 공개일시 등을 귀하께 통지하였으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않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의거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나 주 시 장

담당자 ○○담당 ○○과장 전결 ※ 전결규정임

협조자

시행 ○○○○과- (2009.03.) 접수 ()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http://www.naju.go.kr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이메일 /부분공개(6)

7. 반복민원에 대한 종결처리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요청이 3차례 이상 청구되어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될 경우 보내는 공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 안내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귀하의 청구는 기존 정보공개 처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 2개 이상)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주 시 장

담당자	○○담당	○○과장	전결	※ 전결규정임
협조자				
시행	○○○○과-	(2009.03.)	접수	()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http://www.naju.go.kr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이메일	/부분공개(6)

8.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안내

1. 2009. 00. 00. 접수번호 ○○○○○○호로 접수된 귀하의 **(청구내용 요약)**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불임과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1부. 끝.

나 주 시 장

담당자 ○○담당 ○○과장 전결 ※ 전결규정임

협조자

시행 ○○○○과- (2009.03.) 접수 ()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http://www.naju.go.kr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이메일 /부분공개(6)

※ 본 연장통지서는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www.admin.open.go.kr)에서 입력 후 자동결재 기능을 이용하여 결재 완료되면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정 보 내 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내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2009. 00. 00. / ○○○○○○	당 초 결 정 기 한	2009. 00. 00.
연 장 사 유	<p>1. 내용 : (대상문서명)</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p> <p>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p> <p>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정보 관련 제3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p> <p>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 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일정 조율이 필요한 사항</p> <p>③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사항 등</p>		
연 장 결 정 기 한	2009. 00. 00.		
기 타 안 내 사 항			
<p>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p> <p>2009년 월 일</p> <p>전라남도 나주시장</p>			

처리과명	○○○과	문서번호	○○○과-○○○○(2009. 00. 00.)
기안자	○○○	직위/직급	지방○○○○
검토자	○○○	직위/직급	○○○○담당
협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	직위/직급	○○○○과장
주소	(502-701)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100		
연락처	061-330-8200(전송 : 061-330-8575)		
전자우편주소	○○○@○○○.○○○		

II. 공개 결정통지 관련

1. 공개 결정통지(일반)

공개대상 정보를 당해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공개 결정통지

2009. 00. 00. 접수번호 ○○○○○○호로 접수된 귀하의 (청구내용 요약)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 결정통지합니다.

붙임 정보 공개 결정통지서(유의사항 포함) 1부. 끝.

나 주 시 장

담당자 ○○담당 ○○과장 전결 ※ 전결규정임

협조자

시행 ○○○○과- (2009.03.) 접수 ()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http://www.naju.go.kr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 이메일 /부분공개(6)

※ 본 결정통지서는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www.admin.open.go.kr)에서 입력 후 자동(수동)결재 기능을 이용하여 결재 완료되면 유의사항과 함께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접 수 일 자	○○○○. ○○. ○○.	접 수 번 호	○○○○○○○
청 구 정 보 내 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본 기관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 문서명]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교부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 방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모사전송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개일시(기간)	수수료 납부 후 즉시공개 선택 (일반적인 경우)	공 개 장 소	종합민원과 (처리과 부서명)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 감면액 (C)	계 (A+B-C)
300원	1,000원	0원	1,300원
수 수 료 산 정 내 역	(250원×1장) + (1매초과마다×50원)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농협 626-01-013515 종합민원과
<p>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2009년 월 일</p> <p style="font-size: 1.2em;">전라남도 나주시장</p>			

처리과명	○○○과	문서번호	○○○과-○○○○(2009. ○○. ○○.)
기안자	○○○	직위/직급	지방○○○○
검토자	○○○	직위/직급	○○○○담당
협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	직위/직급	○○○○과장
주소	(502-701)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100		
연락처	061-330-8200(전송 : 061-330-8575)		
전자우편주소	○○○@○○○.○○○		

- ※ 공개일시는 일반적인 경우 "수수료 납부 후 즉시 공개"를 선택(공개일시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P82 공개 여부 결정통지서 등록 참조)설정하고, 공개 방법은 시스템에서 청구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동 체크됨.
- ※ 유의사항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정통지서 출력시 자동으로 출력됨.
⇒ 이하 결정통지서 작성 예시에 유의사항 생략.

※ 유 의 사 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입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공공기관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와 우송료(우표 등)를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공개결정통지(정보소재 안내)

공개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나 이미 사전공개·공표된 경우로서 정보소재 안내로 갈음하는 통지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공개 결정통지

2009. 00. 00. 접수번호 ○○○○○○호로 접수된 귀하의 (청구내용 요약)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 결정통지합니다.

붙임 정보 공개 결정통지서(유의사항 포함) 1부. 끝.

※ 유의사항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정통지서 출력시 자동으로 출력됨.
⇒ 이하 결정통지서 작성 예시에 유의사항 생략.

나 주 시 장

담당자	○○담당	○○과장	전결	※ 전결규정임
협조자				
시행	○○○○과-	(2009.03.)	접수	()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http://www.naju.go.kr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이메일 /부분공개(6)
※	본 결정통지서는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www.admin.open.go.kr)에서 입력 후 자동(수동)결재 기능을 이용하여 결재 완료되면 유의사항과 함께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접 수 일 자	○○○○. ○○. ○○.	접 수 번 호	○○○○○○
청 구 정 보 내 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p>본 기관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p> <p>[공개 문서명]</p> <p>다만,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사전공개·공표된 자료로서 아래 [공공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 예나주시 홈페이지(www.naju.go.kr)] 에서 누구나 열람·출력 가능하므로 정보소재 안내로 대신합니다.</p> <p>- 정보소재 : (홈페이지 내 위치, 열람방법 등 상세 기재)</p>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교부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 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모사전송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개일시(기간)		공 개 장 소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 감면액 (C)	계 (A+B-C)
0원	0원	0원	0원
수 수 료 산 정 내 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p>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2009년 월 일</p> <p>전라남도 나주시장</p>			

처리과명	○○○과	문서번호	○○○과-○○○○(2009. ○○. ○○.)
기안자	○○○	직위/직급	지방○○○○
검토자	○○○	직위/직급	○○○○담당
협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	직위/직급	○○○○과장
주소	(502-701)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100		
연락처	061-330-8200(전송 : 061-330-8575)		
전자우편주소	○○○@○○○.○○○		

3. 공개 결정통지(타 정보로 같음)

청구내용과 일치하는 자료는 없으나, 유사한 자료로 같음하는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공개결정 통지

2009. 00. 00. 접수번호 ○○○○○○호로 접수된 귀하의 (청구내용 요약)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 결정통지합니다.

붙임 정보 공개 결정통지서(유의사항 포함) 1부. 끝.

※ 유의사항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정통지서 출력시 자동으로 출력됨.
⇒ 이하 결정통지서 작성 예시에 유의사항 생략.

나 주 시 장

담당자	○○담당	○○과장	전결	※ 전결규정임
협조자				
시행	○○○○과-	(2009.03.)	접수	()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http://www.naju.go.kr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이메일	/부분공개(6)

※ 본 결정통지서는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www.admin.open.go.kr)에서 입력 후 자동(수동)결재 기능을 이용하여 결재 완료되면 유의사항과 함께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접 수 일 자	○○○○. ○○. ○○.	접 수 번 호	○○○○○○
청 구 정 보 내 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공개 문서명]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하는 자료는 없으나, 청구정보의 (핵심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상기 자료를 공개합니다.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교부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 방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모사전송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 개 일 시 (기 간)	수수료 납부 후 즉시공개 선택 (일반적인 경우)	공 개 장 소	종합민원과 (처리과 부서명)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 감면액 (C)	계 (A+B-C)
300원	1,000원	0원	1,300원
수 수 료 산 정 내 역	(250원×1장) + (1매초과마다×50원)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농협 626-01-013515 종합민원과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09년 월 일 전라남도 나주시장			

처리과명	○○○과	문서번호	과-○○○○(2009. ○○. ○○.)
기안자	○○○	직위/직급	지방○○○○
검토자	○○○	직위/직급	○○○○과장
협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	직위/직급	○○○○국장
주소	(502-701)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100		
연락처	061-330-8200(전송 : 061-330-8575)		
전자우편주소	○○○@○○○.○○○		

※ 공개일시는 일반적인 경우 "수수료 납부 후 즉시 공개"를 선택(공개일시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P82 공개 여부 결정통지서 등록 참조)설정하고, 공개 방법은 시스템에서 청구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동 체크됨.

4. 공개 결정통지(즉시공개)

공개 여부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공개하는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 ※ 본 즉시공개서는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www.admin.opengo.kr)에서 입력 후 출력하여내부결재(간이결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는 즉시공개서에 소화)
- ※ 즉시공개 처리가 가능한 정보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 대체적으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보고서·안내서, 의견서 등이 해당되며, 이미 공개가 된 사항도 이에 해당됨.

시 공 개 서

수 신 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접 수 일 자	○○○○. ○○. ○○.	접 수 번 호	○○○○○○
청 구 정 보 내 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공개 문서명]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naju.go.kr)내 열린시정 / 예산살림에 게시되어 있으며, 대국민에게 공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 감면액 (C)	계 (A+B-C)
0원	0원	0원	0원
수 수 료 정 내 료 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09년 월 일 전라남도 나주시 장			

처리과명	○○○과	문서번호	○○○과-○○○○(2009. ○○. ○○.)
기안자	○○○	직위/직급	지방○○○○
검토자	○○○	직위/직급	○○○○과장
협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	직위/직급	○○○○국장
주소	(502-701)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100		
연락처	061-330-8200(전송 : 061-330-8575)		
전자우편주소	○○○@○○○.○○○		

5.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반한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 안내문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불구하고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시 청구인에게 보내는 공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나○○ 귀하(우520-701 나주시 ○○동 ○○)

(경유)

제목 정보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 알림

1. 2009. 00. 00. 접수번호 ○○○○○○호로 접수된 귀하의 (청구내용 요약)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비공개(또는 부분공개) 요청되었으나,

3.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불임과 같이 공개(또는 부분공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하지만,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의거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므로, 본 공개청구 건의 공개 실시일은 2009. 00. 00. 이후로 실시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정보 공개 결정통지서(유의사항 포함) 1부. 끝.

※ 결정통지서 작성시 공개 실시일을 통지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설정

나 주 시 장

담당자 ○○담당 ○○국(과장) 전결 ※ 전결규정임
협조자

시행 ○○○○과- (2009.00.00) 접수 ()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http://www.naju.go.kr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 이메일 /부분공개(6)

※ 본 결정통지서는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www.admin.open.go.kr)에서 입력 후 자동(수동)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결제 완료되면 유의사항과 함께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III. 부분공개 결정통지 관련

1. 부분공개 결정통지(법 제9조제1항제1호 해당시)

공개대상 정보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부분공개할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통지

1. 2009. 00. 00. 접수번호 ○○○○○○호로 접수된 귀하의 (청구내용 요약)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부분공개 결정통지합니다.

2.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유의사항 포함) 1부. 끝.

※ 유의사항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정통지서 출력시 자동으로 출력됨.

⇒ 이하 결정통지서 작성 예시에 유의사항 생략.

나 주 시 장

담당자
협조자

○○담당

○○과장

○○○○국장 전결 ※ 전결규정임

시행 ○○○○과-

(2009.03.) 접수

()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http://www.naju.go.kr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이메일

/부분공개(6)

※ 본 결정통지서는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www.admin.open.go.kr)에서 입력 후 자동(수동)결재 기능을 이용하여 결재 완료되면 유의사항과 함께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접 수 일 자	○○○○. ○○. ○○.	접 수 번 호	○○○○○○○
청 구 정 보 내 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대상 문서명)		
비 공개(전부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2.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 등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교부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 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모사전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개일시(기간)	수수료 납부 후 즉시공개 선택 (일반적인 경우)	공 개 장 소	종합민원과 (처리과 부서명)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 감면액 (C)	계 (A+B-C)
300원	0원	0원	1,300원
수 수 료 내 역	(10장까지 200원) + (5매마다×100원)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농협 626-01-013515 종합민원과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09년 월 일 전라남도 나주시장			

처리과명	○○○과	문서번호	○○○과-○○○○(2009. ○○. ○○.)
기안자	○○○	직위/직급	지방○○○○
검토자	○○○	직위/직급	○○○○과장
협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	직위/직급	○○○○국장
주소	(502-701)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100		
연락처	061-330-8200(전송 : 061-330-8575)		
전자우편주소	○○○@○○○.○○○		

※ 공개일시는 일반적인 경우 "수수료 납부 후 즉시 공개"를 선택(공개일시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P82 공개 여부 결정통지서 등록 참조)설정하고, 공개 방법은 시스템에서 청구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동 체크됨.

2. 부분공개 결정통지

(법 제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 해당시)

공개대상 정보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부분공개할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통지

1. 2009. 00. 00. 접수번호 ○○○○○○호로 접수된 귀하의 (청구내용 요약)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부분공개 결정통지합니다.

2.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유의사항 포함) 1부. 끝.

※ 유의사항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정통지서 출력시 자동으로 출력됨.
⇒ 이하 결정통지서 작성 예시에 유의사항 생략.

나 주 시 장

담당자
협조자

○○담당

○○과장

○○○○국장 전결 ※ 전결규정임

시행 ○○○○과-

(2009.03.) 접수

()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http://www.naju.go.kr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이메일

/부분공개(6)

※ 본 결정통지서는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www.admin.open.go.kr)에서 입력 후 자동(수동)결재 기능을 이용하여 결재 완료되면 유의사항과 함께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접 수 일 자	○○○○. ○○. ○○.	접 수 번 호	○○○○○○○
청 구 정 보 내 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대상 문서명)		
비공개(전부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호 2.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비공개정보 내용)이 혼합되어 있어 전부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교부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 방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모사전송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개일시(기간)	수수료 납부 후 즉시공개 선택 (일반적인 경우)	공 개 장 소	종합민원과 (처리과 부서명)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 감면액 (C)	계 (A+B-C)
300원	1,000원	0원	1,300원
수 수 료 내 역 산 정 내 역	(250원×1장) + (1매초과마다×50원)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농협 626-01-013515 종합민원과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09년 월 일 전라남도 나주시장			

처리과명	○○○과	문서번호	○○○과-○○○○○(2009. ○○. ○○.)
기안자	○○○	직위/직급	지방○○○○
검토자	○○○	직위/직급	○○○○과장
협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	직위/직급	○○○○국장
주소	(502-701)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100		
연락처	061-330-8200(전송 : 061-330-8575)		
전자우편주소	○○○@○○○.○○○		

※ 공개일시는 일반적인 경우 “수수료 납부 후 즉시 공개”를 선택(공개일시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P82 공개 여부 결정통지서 등록 참조)설정하고, 공개 방법은 시스템에서 청구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동 체크됨.

3. 부분공개 결정통지(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시)

공개대상 정보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부분공개할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통지

1. 2009. 00. 00. 접수번호 ○○○○○○호로 접수된 귀하의 **(청구내용 요약)**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부분공개 결정통지합니다.

2.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유의사항 포함) 1부. 끝.

**※ 유의사항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정통지서 출력시 자동으로 출력됨.
⇒ 이하 결정통지서 작성 예시에 유의사항 생략.**

나 주 시 장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전결 ※ 전결규정임
협조자

시행 ○○○○과- (2009.03.) 접수 ()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http://www.naju.go.kr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이메일 /부분공개(6)

※ 본 결정통지서는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www.admin.open.go.kr)에서 입력 후 자동(수동)결재 기능을 이용하여 결재 완료되면 유의사항과 함께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접 수 일 자	○○○○. ○○. ○○.	접 수 번 호	○○○○○○○
청 구 정 보 내 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공 개 내 용	(대상 문서명)		
비공개(전부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2.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 전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교부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 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모사전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개일시(기간)	수수료 납부 후 즉시공개 선택 (일반적인 경우)	공 개 장 소	종합민원과 (처리과 부서명)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 감면액 (C)	계 (A+B-C)
300원	0원	0원	300원
수 수 료 정 내 역	(10장까지 200원) + (5매마다×100원)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농협 626-01-013515 종합민원과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09년 월 일 전라남도 나주시장			

처리과명	○○○과	문서번호	○○○과-○○○○○(2009. ○○. ○○.)
기안자	○○○	직위/직급	지방○○○○○
검토자	○○○	직위/직급	○○○○○과장
협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	직위/직급	○○○○○국장
주소	(502-701)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100		
연락처	061-330-8200(전송 : 061-330-8575)		
전자우편주소	○○○@○○○.○○○		

※ 공개일시는 일반적인 경우 “수수료 납부 후 즉시 공개”를 선택(공개일시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P82 공개 여부 결정통지서 등록 참조)설정하고, 공개 방법은 시스템에서 청구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동 체크됨.

IV. 비공개 결정통지 관련

1. 비공개 결정통지(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통지

1. 2009. 00. 00. 접수번호 ○○○○○○호로 접수된 귀하의 (청구내용 요약)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비공개 결정통지합니다.

2.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유의사항 포함) 1부. 끝.

※ 유의사항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정통지서 출력시 자동으로 출력됨.
⇒ 이하 결정통지서 작성 예시에 유의사항 생략.

나 주 시 장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전결 ※ 전결규정임
협조자

시행 ○○○○과- (2009.03.) 접수 ()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http://www.naju.go.kr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이메일 /부분공개(6)

※ 본 결정통지서는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www.admin.open.go.kr)에서 입력 후 자동(수동)결재 기능을 이용하여 결재 완료되면 유의사항과 함께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접 수 일 자	○○○○. ○○. ○○.	접 수 번 호	○○○○○○
청 구 정 보 내 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 공개(전부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대상 문서명)</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p> <p>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p> <p>① 「지방세법」 제69조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p> <p>② 「형사소송법」 제47조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서류</p> <p>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p> <p>④ 「통계법」 제33조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통계 작성 중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으)로서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9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전라남도 나주시장</p>			

☞ 적용 사례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의 취득세 등 과세 관련 자료</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p> <p>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지방세법」 제69조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2. 비공개결정 통지(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통지

1. 2009. 00. 00. 접수번호 ○○○○○○호로 접수된 귀하의 **(청구내용 요약)**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비공개 결정통지합니다.

2.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유의사항 포함) 1부. 끝.

**※ 유의사항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정통지서 출력시 자동으로 출력됨.
⇒ 이하 결정통지서 작성 예시에 유의사항 생략.**

나 주 시 장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전결 * 전결규정임
협조자

시행 ○○○○과- (2009.03.) 접수 ()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http://www.naju.go.kr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 이메일 /부분공개(6)

※ 본 결정통지서는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www.admin.open.go.kr)에서 입력 후 자동(수동)결재 기능을 이용하여 결재 완료되면 유의사항과 함께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접 수 일 자	○○○○. ○○. ○○.	접 수 번 호	○○○○○○○
청 구 정 보 내 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 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대상 문서명)</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p> <p>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p> <p>①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p> <p>② 대북한 관련 자료</p> <p>③ 남북회담 협상대상 수립 관련 자료</p> <p>④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p> <p>⑤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p> <p>⑥ 위험물의 저장위치</p> <p>⑦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등</p> <p>(으)로서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9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전라남도 나주시장</p>			

☞ 적용 사례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보안감찰 처분에 관한 통계자료</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p> <p>3. 사유 :</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로서 보안관찰 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 관찰자들의 매월별 규모, 처분시기, 지역별 분포에 대한 전국적 현황과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개될 경우, 대남공작활동 지역으로 보안관찰 처분대상자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는 등 북한정보기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3. 비공개 결정통지(법 제9조제1항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및 공공안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통지

1. 2009. 00. 00. 접수번호 ○○○○○○호로 접수된 귀하의 (청구내용 요약)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비공개 결정통지합니다.

2.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유의사항 포함) 1부. 끝.

※ 유의사항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정통지서 출력시 자동으로 출력됨.
⇒ 이하 결정통지서 작성 예시에 유의사항 생략.

나 주 시 장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전결 ※ 전결규정임
협조자

시행 ○○○○과- (2009.03.) 접수 ()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http://www.naju.go.kr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이메일 /부분공개(6)

※ 본 결정통지서는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www.admin.open.go.kr)에서 입력 후 자동(수동)결재 기능을 이용하여 결재 완료되면 유의사항과 함께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접 수 일 자	○○○○. ○○. ○○.	접 수 번 호	○○○○○○
청 구 정 보 내 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 공개(전부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 (대상 문서명)</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p> <p>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p> <p>① 수사관계 조희사항</p> <p>② 방재·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p> <p>③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p> <p>④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p> <p>⑤ 인감업무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변조, 범죄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등</p> <p>(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국가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9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전라남도 나주시장</p>			

☞ 적용 사례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총기허가 현황·위탁관리 현황 정보</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p> <p>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방재·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로서 총기 구경별·종류별·목적별 허가 및 폐기현황 및 위탁처, 위탁되고 있는 총기 수량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범죄단체 등에 의한 총기 등의 악용시도 등으로 국가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4. 비공개 결정통지(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 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통지

1. 2009. 00. 00. 접수번호 ○○○○○○호로 접수된 귀하의 **(청구내용 요약)**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비공개 결정통지합니다.

2.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불임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유의사항 포함) 1부. 끝.

**※ 유의사항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정통지서 출력시 자동으로 출력됨.
⇒ 이하 결정통지서 작성 예시에 유의사항 생략.**

나 주 시 장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전결 * 전결규정임
협조자

시행 ○○○○과- (2009.03.) 접수 ()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http://www.naju.go.kr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이메일 /부분공개(6)

※ 본 결정통지서는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www.admin.open.go.kr)에서 입력 후 자동(수동)결재 기능을 이용하여 결재 완료되면 유의사항과 함께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접 수 일 자	○○○○. ○○. ○○.	접 수 번 호	○○○○○○
청 구 정 보 내 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 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대상 문서명)</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p> <p>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p> <p>①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및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p> <p>②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p> <p>③ 무기·화약·마약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p> <p>④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9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전라남도 나주시장</p>			

☞ 적용 사례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수용동태기록부(문제수용자)</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p> <p>3. 사유 :</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문제수용자로 지정된 수용자의 처우상 유의사항, 접견 및 서신 등의 처리방법과 주의사항, 출정 및 이송시의 계호방법 등이 기록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문제수용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문제수용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의 현저한 곤란으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5. 비공개 결정통지(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인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통지

1. 2009. 00. 00. 접수번호 ○○○○○○호로 접수된 귀하의 (청구내용 요약)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비공개 결정통지합니다.

2.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유의사항 포함) 1부. 끝.

※ 유의사항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정통지서 출력시 자동으로 출력됨.
⇒ 이하 결정통지서 작성 예시에 유의사항 생략.

나 주 시 장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전결 ※ 전결규정임
협조자

시행 ○○○○과- (2009.03.) 접수 ()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http://www.naju.go.kr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이메일 /부분공개(6)

※ 본 결정통지서는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www.admin.open.go.kr)에서 입력 후 자동(수동)결재 기능을 이용하여 결재 완료되면 유의사항과 함께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접 수 일 자	○○○○. ○○. ○○.	접 수 번 호	○○○○○○
청 구 정 보 내 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 공개(전부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대상 문서명)</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p> <p>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p> <p>①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p> <p>② 국가고사·자격시험의 위원별 채점결과 및 출제위원 명단</p> <p>③ 개별인허가 신청·심사·결정에 관한 사항</p> <p>④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p> <p>⑤ 위원회 등 각종 회의 관련 자료</p> <p>⑥ 임면·복무·급여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p> <p>⑦ 보조금·융자 관련 정보 중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 등</p> <p>(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9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전라남도 나주시장</p>			

☞ 적용 사례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승진심사 과정이 담긴 인사위원회 회의록</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p> <p>3. 사유 :</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의견청취·토론과정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저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발언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보복조치 등으로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6. 비공개 결정통지(법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통지

1. 2009. 00. 00. 접수번호 ○○○○○○호로 접수된 귀하의 (청구내용 요약)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비공개 결정통지합니다.

2.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불임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유의사항 포함) 1부. 끝.

※ 유의사항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정통지서 출력시 자동으로 출력됨.
⇒ 이하 결정통지서 작성 예시에 유의사항 생략.

나 주 시 장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전결 ※ 전결규정임
협조자

시행 ○○○○과- (2009.03.) 접수 ()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http://www.naju.go.kr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이메일 /부분공개(6)

※ 본 결정통지서는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www.admin.open.go.kr)에서 입력 후 자동(수동)결재 기능을 이용하여 결재 완료되면 유의사항과 함께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접 수 일 자	○○○○. ○○. ○○.	접 수 번 호	○○○○○○
청 구 정 보 내 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 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대상 문서명)</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p> <p>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p> <p>①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p> <p>② 학력·학교성적·상별사항, 성격 등 교육 및 훈련정보</p> <p>③ 소유주택·연봉 등 재산상황</p> <p>④ 전과기록·교통위반기록·이혼기록 등 법적정보</p> <p>⑤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전화번호·학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p> <p>⑥ 채용후보자 명부, 징계심의·결정통지,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p> <p>⑦ 시험원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 등 개인정보 등</p> <p>(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9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전라남도 나주시장</p>			

☞ 적용 사례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특정 공무원 8명의 상별,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p> <p>3. 사유 :</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개인의 인사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들의 불명예스러운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정보가 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7. 비공개 결정통지(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통지

1. 2009. 00. 00. 접수번호 ○○○○○○호로 접수된 귀하의 (청구내용 요약)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비공개 결정통지합니다.

2.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불임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유의사항 포함) 1부. 끝.

※ 유의사항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정통지서 출력시 자동으로 출력됨.
⇒ 이하 결정통지서 작성 예시에 유의사항 생략.

나 주 시 장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전결 ※ 전결규정임
협조자

시행 ○○○○과- (2009.03.) 접수 ()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http://www.naju.go.kr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이메일 /부분공개(6)

※ 본 결정통지서는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www.admin.open.go.kr)에서 입력 후 자동(수동)결재 기능을 이용하여 결재 완료되면 유의사항과 함께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접 수 일 자	○○○○. ○○. ○○.	접 수 번 호	○○○○○○
청 구 정 보 내 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 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대상 문서명)</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p> <p>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p> <p>①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설비투자 및 마케팅계획 등 경영·영업상의 정보</p> <p>② 경영방침·자금·인사 등 사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p> <p>③ 계약체결과정·결과 관련 문서</p> <p>④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p> <p>⑤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등</p> <p>(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9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전라남도 나주시장</p>			

☞ 적용 사례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p> <p>3. 사유 :</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설비투자 및 마케팅 계획 등 경영·영업상의 정보로서 입찰참가자들의 감정평가 수수료, 심사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경쟁 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일정 부분 상실하여 해당 업체(또는 개인)의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 손상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8. 비공개 결정통지(법 제9조제1항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통지

1. 2009. 00. 00. 접수번호 ○○○○○○호로 접수된 귀하의 (청구내용 요약)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비공개 결정통지합니다.

2.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유의사항 포함) 1부. 끝.

※ 유의사항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정통지서 출력시 자동으로 출력됨.
⇒ 이하 결정통지서 작성 예시에 유의사항 생략.

나 주 시 장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전결 ※ 전결규정임
협조자

시행 ○○○○과- (2009.03.) 접수 ()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http://www.naju.go.kr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 이메일 /부분공개(6)

※ 본 결정통지서는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www.admin.open.go.kr)에서 입력 후 자동(수동)결재 기능을 이용하여 결재 완료되면 유의사항과 함께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접 수 일 자	○○○○. ○○. ○○.	접 수 번 호	○○○○○○
청 구 정 보 내 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공개(전부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대상 문서명)</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p> <p>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p> <p>① 용지매수계약서</p> <p>② 설계단가표</p> <p>③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p> <p>④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p> <p>⑤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등</p> <p>(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9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전라남도 나주시장</p>			

☞ 적용 사례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증권정보</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p> <p>3. 사유 :</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계약자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당해 건축물의 계약내용(예약명, 하자담보기간, 계약금액 등)이 포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9. 비공개 결정통지(정보의 부존재)

공개청구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을 경우 보내는 결정통지 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통지

1. 2009. 00. 00. 접수번호 ○○○○○○호로 접수된 귀하의 **(청구내용 요약)**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비공개 결정통지합니다.

2.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불임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유의사항 포함) 1부. 끝.

**※ 유의사항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정통지서 출력시 자동으로 출력됨.
⇒ 이하 결정통지서 작성 예시에 유의사항 생략.**

나 주 시 장

담당자
협조자

○○담당

○○과장

○○○○국장 전결 ※ 전결규정임

시행 ○○○○과- (2009.03.) 접수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이메일

()
/http://www.naju.go.kr
/부분공개(6)

※ 본 결정통지서는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www.admin.open.go.kr)에서 입력 후 자동(수동)결재 기능을 이용하여 결재 완료되면 유의사항과 함께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접 수 일 자	○○○○. ○○. ○○.	접 수 번 호	○○○○○○
청 구 정 보 내 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 공개(전부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대상 문서명)</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p> <p>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p> <p>“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게 하는 것”입니다.</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p> <p>① 당해 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항</p> <p>② (법령명)에서 명시한 보존기간(작성 : 날짜, 보존기간 : ○년)이 경과하여 현재 폐기된 사항</p> <p>③ (날짜) 경에 발간 예정인 사항 등</p> <p>(으)로서 우리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9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전라남도 나주시장</p>			

☞ 적용 사례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나주시 00면 00리 00번지 특조관련 서류(보증서 및 확인서)</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p> <p>3. 사유 :</p> <p>“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게 하는 것”입니다.</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보존기간(작성:1971. 12. 보존기간:10년)이 경과하여 현재 폐기된 사항으로서 우리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10. 비공개 결정통지(불명확한 청구 내용)

청구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공개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내는 결정통지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통지

1. 2009. 00. 00. 접수번호 ○○○○○○호로 접수된 귀하의 (청구내용 요약)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비공개 결정통지합니다.

2.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불임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유의사항 포함) 1부. 끝.

※ 유의사항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정통지서 출력시 자동으로 출력됨.
⇒ 이하 결정통지서 작성 예시에 유의사항 생략.

나 주 시 장

담당자
협조자

○○담당

○○과장

○○○○국장 전결 ※ 전결규정임

시행 ○○○○과- (2009.03.) 접수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이메일

()
/http://www.naju.go.kr
/부분공개(6)

※ 본 결정통지서는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www.admin.open.go.kr)에서 입력 후 자동(수동)결재 기능을 이용하여 결재 완료되면 유의사항과 함께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접 수 일 자	○○○○. ○○. ○○.	접 수 번 호	○○○○○○
청 구 정 보 내 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		
비 공개(전부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내용 : (대상 문서명)</p> <p>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p> <p>3.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p> <p>상기 문서(또는 정보)는</p> <p>① 청구내용이 불명확하여 우리시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p> <p>② 청구기간 또는 청구범위 등이 특정되지 않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사항</p> <p>(으)로서 귀하께 (보완요청날짜)에 '청구내용 보완'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어 더 이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에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9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전라남도 나주시장</p>			

처리과명	○○○과	문서번호	○○○과-○○○○(2009. ○○. ○○.)
기안자	○○○	직위/직급	지방○○○○
검토자	○○○	직위/직급	○○○○과장
협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	직위/직급	○○○○국장
주소	(502-701)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100		
연락처	061-330-8200(전송 : 061-330-8575)		
전자우편주소	○○○@○○○.○○○		

V. 불복구제절차 관련

1. 이의신청 결정통지서(각하)

이의신청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본안 심리(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거절하는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경유)

제목 이의신청 각하 통지

1. 2009. 00. 00. 접수번호 ○○○○○○호로 접수된 귀하의 **(이의신청 내용 요약)** 이의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서 명시한 이의신청기간(비공개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이 지난 사항으로서, 이의신청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각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이의신청 각하 결정통지서(유의사항 포함) 1부. 끝.

**※ 유의사항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정통지서 출력시 자동으로 출력됨.
⇒ 이하 결정통지서 작성 예시에 유의사항 생략.**

나 주 시 장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시장 전결 ※ 전결규정임
협조자

시행 ○○○○과- (2009.03.) 접수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이메일

()
/http://www.naju.go.kr
/부분공개(6)

※ 본 결정통지서는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www.admin.open.go.kr)에서 입력 후 자동(수동)결재 기능을 이용하여 결재 완료되면 유의사항과 함께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각하)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접 수 일 자	○○○○. ○○. ○○.	접 수 번 호	○○○○○○
이 의 신 청 내 용	○○○○○(청구인이 작성한 이의신청내용)		
결 정 내 용 및 사 유	<p>1.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p> <p>2.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 귀하의 이의신청은</p> <p>① 공개결정에 대한 사항</p> <p>② 결정통지전에 대한 사항</p> <p>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서 명시한 이의신청기간(비공개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이 지난 사항</p> <p>(으)로서 이의신청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각하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9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전라남도 나주시장</p>			

처리과명	○○○과	문서번호	○○○과-○○○○(2009. ○○. ○○.)
기안자	○○○	직위/직급	지방○○○○
검토자	○○○	직위/직급	○○○○국장
협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	직위/직급	부시장
주소	(502-701)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100		
연락처	061-330-8200(전송 : 061-330-8575)		
전자우편주소	○○○@○○○.○○○		

2. 이의신청 결정통지서(기각)

본안심리(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이의신청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할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경유)

제목 이의신청 기각 통지

1. 2009. 00. 00. 접수번호 ○○○○○○호로 접수된 귀하의 (이의신청 내용 요약)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9. 00. 00.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결과 (구체적 기각 사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이의신청 기각 결정통지서(유의사항 포함) 1부. 끝.

※ 유의사항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정통지서 출력시 자동으로 출력됨.
⇒ 이하 결정통지서 작성 예시에 유의사항 생략.

나 주 시 장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시장 전결 ※ 전결규정임
협조자

시행 ○○○○과- (2009.03.) 접수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이메일

()
/http://www.naju.go.kr
/부분공개(6)

※ 본 결정통지서는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www.admin.open.go.kr)에서 입력 후 자동(수동)결재 기능을 이용하여 결재 완료되면 유의사항과 함께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기각)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접 수 일 자	○○○○. ○○. ○○.	접 수 번 호	○○○○○○
이 의 신 청 내 용	○○○○○(청구인이 작성한 이의신청내용)		
결 정 내 용 및 사 유	<p>1.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p> <p>2. 사유 :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해 (날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구체적 기각 사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9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전라남도 나주시장</p>			

처리과명	○○○과	문서번호	○○○과-○○○○(2009. ○○. ○○.)
기안자	○○○	직위/직급	지방○○○○
검토자	○○○	직위/직급	○○○○국장
협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	직위/직급	부시장
주소	(502-701)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100		
연락처	061-330-8200(전송 : 061-330-8575)		
전자우편주소	○○○@○○○.○○○		

3.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인용)

본안심리(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이의신청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 할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경유)

제목 이의신청 인용 통지

1. 2009. 00. 00. 접수번호 ○○○○○○호로 접수된 귀하의 (이의신청 내용 요약)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9. 00. 00.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결과 (구체적 인용 사유 기재)로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붙임과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2.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이의신청 인용 결정통지서 1부. 끝.

※ 유의사항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정통지서 출력시 자동으로 출력됨.
⇒ 이하 결정통지서 작성 예시에 유의사항 생략.

나 주 시 장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시장 전결 ※ 전결규정임
협조자

시행 ○○○○과- (2009.03.) 접수 ()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http://www.naju.go.kr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이메일 /부분공개(6)

※ 본 결정통지서는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www.admin.open.go.kr)에서 입력 후 자동(수동)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결제 완료되면 유의사항과 함께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접 수 일 자	○○○○. ○○. ○○.	접 수 번 호	○○○○○○○
이 의 신 청 내 용	○○○○○(청구인이 작성한 이의신청내용)		
공 개 내 용	(대상 문서명)		
공 개 내 용	공 개 형 태	전자파일	
	교 부 방 법	전자우편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 감면액 (C)	계 (A+B-C)
200원	0원	0원	200원
수 산 정 내 료 역	(200원×10매까지)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농협 626-01-013515 종합민원과
<p>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9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전라남도 나주시장</p>			

처리과명	○○○과	문서번호	○○○과-○○○○○(2009. ○○. ○○.)
기안자	○○○	직위/직급	지방○○○○
검토자	○○○	직위/직급	○○○○국장
협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	직위/직급	부시장
주소	(502-701)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100		
연락처	061-330-8200(전송 : 061-330-8575)		
전자우편주소	○○○@○○○.○○○		

※ 인용 결정시는 정보 공개실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 납부시 자료 공개.

※ 본 결정통지서는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www.admin.open.go.kr)에서 입력 후 자동(수동)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결제 완료되면 유의사항과 함께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분인용)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접 수 일 자	○○○○. ○○. ○○.	접 수 번 호	○○○○○○
이 의 신 청 내 용	○○○○○(청구인이 작성한 이의신청내용)		
공 개 내 용	(대상 문서명)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p>1.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p> <p>2. 사유 :</p> <p style="padding-left: 20px;">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해 (날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구체적 기각 사유)로 (비공개대상 결정 내용)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공 개 내 용	공 개 형 태	전자파일	
	교 부 방 법	전자우편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 감면액 (C)	계 (A+B-C)
200원	원	0원	200원
수 수 료 정 내 료 역	(200원×10매까지)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농협 626-01-013515 종합민원과
<p>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2009년 월 일</p> <p style="font-size: 1.2em;">전라남도 나주시장</p>			

처리과명	○○○과	문서번호	○○○과-○○○○(2009. ○○. ○○.)
기안자	○○○	직위/직급	지방○○○○
검토자	○○○	직위/직급	○○○○국장
협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	직위/직급	부시장
주소	(502-701)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100		
연락처	061-330-8200(전송 : 061-330-8575)		
전자우편주소	○○○@○○○.○○○		

※ 부분인용 결정시는 공개하기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보 공개실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 납부시 자료 공개
⇒ 비공개 부분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기각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5.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신청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내는 통지문입니다.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실천합시다”



나 주 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경유)

제목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안내

1. 2009. 00. 00. 접수번호 ○○○○○○호로 접수된 귀하의 **(청구내용 요약)**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불임과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1부. 끝.

**※ 유의사항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결정통지서 출력시 자동으로 출력됨.
⇒ 이하 결정통지서 작성 예시에 유의사항 생략.**

나 주 시 장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시장 전결 ※ 전결규정임
협조자

시행 ○○○○과- (2009.03.) 접수 ()
우 520-70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13(송월동 1100번지) /http://www.naju.go.kr
전화 061) 330-8200 /전송 061)330 -8575 / 이메일 /부분공개(6)

※ 본 연장통지서는 정보공개시스템공무원창구(www.admin.open.go.kr)에서 입력 후 자동결재 기능을 이용하여 결재 완료되면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신자 최○○ 귀하(우520-701 나주시 송월동 1100)

접 수 일 자	2009. 00. 00.	접 수 번 호	○○○○○○
이 의 신 청 내 용	○○○○○(청구인이 작성한 이의신청내용)		
연 장 사 유	<p>1.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p> <p>2. 사유 :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사유를 기재</p> <p>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정보 관련 제3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p> <p>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일정 조율이 필요한 사항</p> <p>③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사항 등</p>		
연 장 결 정 기 한	2009. 00. 00.		
기 타 안 내 사 항			
<p>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p> <p style="font-size: 1.2em;">2009년 월 일</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전라남도 나주시장</p>			

처리과명	○○○과	문서번호	○○○과-○○○○(2009. 00. 00.)
기안자	○○○	직위/직급	지방○○○○
검토자	○○○	직위/직급	○○○○담당
협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	직위/직급	○○○○과장
주소	(502-701)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100		
연락처	061-330-8200(전송 : 061-330-8575)		
전자우편주소	○○○@○○○.○○○		

VI.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기준 및 부과 요율표

1. 수수료 감면 기준(법 제17조, 영 제17조, 조례 제19조제2항)

- 수수료 감면 비율 : 총 수수료의 50% 적용(우편요금은 제외)
- 수수료 감면 대상
 - 비영리의 학술, 공인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기타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이 경우는 공공기관의 판단 여부 즉, 재량권이 주어진 경우로서 시민단체의 공익적 감시 활동이나 언론사 신문기자가 공익적 보도를 위한 기사자료 확보 수단으로 청구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2. 수수료 징수 시기 및 징수 방법

- 징수 시기
 - 직접 방문 정보 공개시는 수료 현금 징수 후 공개
 - 교부 방법이 우편일 경우 결정통지시 우편요금을 계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수수료+우편요금)을 징수한 후 우편 발송
- 징수 방법
 - 수수료 : 수입증지로 소화
 - ☞ 종합민원실 6번 창구에서 해당 금액만큼의 수수료를 기안문 또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여백에 수입증지 소화 후 처리 부서에서 보관
⇒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공개 실시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여야 함.
 - ☞ 청구인이 정보공개 시스템상에서 핸드폰,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
⇒ 이 경우 시스템에서 통지상태를 자동으로 공개 완료로 변환
 - 우편요금 : 우편 발송 영수증을 수수료를 소화한 기안문 또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여백에 첨부

3. 수수료 요율표 : 별첨 참조

4. 수수료 및 우편요금 입금 계좌 : 농협 626 - 01 - 013515 종합민원과

- ☞ 계좌입금시 종합민원과에서 현금 수령하여 수입증지로 소화 후 공개

【별첨】

정보 공개 수수료 요율표

공개 대상	공개 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 필름	○시청 -1편이 1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켤(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1건(1MB 기준) 1회 : 200원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